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유류분 반환

원 고

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피 고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,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게 34,155,775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[redacted]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 [REDACTED]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은 위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, 원고 [REDACTED]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[REDACTED]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